

검 토 보 고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환경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민, 사업자, 학교, 언론, 단체, 시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 및 책무·역할분담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추진사항을 환경백서로 작성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원칙을 정함. (안 제13조)

○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함. (안 제19조)

○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규정함. (안 제18조·제20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시의 기본이념과 시, 시민, 사업자 등의 책무와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법령의 근거없이 시 자체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임.

○ 도내 기초자치단체중 수원·의정부·안양시등 8개 시·군에서 이미 동일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조례안의 내용이 「환경정책기본법」과 「경기도환경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등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관련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벌칙규정이 없어 조례로서의 실효성은 불투명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바 반대의 타당성과 지역 이기주의 여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됨.

○ 한편 안 제19조에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시·도별 환경기준을 심의하는 “지방환경보전위원회”와 법적성격 및 기능이 상이함에도 그 명칭이 유사하여 법 및 조례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